

2020년 최저임금 미만을 분석결과 및 시사점

2021. 3.

- ※ 「2020년 최저임금 미만을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로 2001년 이후부터 산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 목 차 ▶

요 약

1. 주요 분석결과 / 1

- 가.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19만명(15.6%) 역대 2번째로 많아, 지난 20여년간 261만명(11.3%p) 증가 / 1
- 나. 높은 미만율(15.6%)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OECD 최상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상대적 수준)에 기인 / 2
- 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4
- 라.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농림어업 51.3%, 숙박음식업 42.6%.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 5

2. 시사점 / 6

< 요약 >

1. 2020년 최저임금 미만을 분석결과

※ 자료 :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통계청) 분석

가.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19만명(15.6%) 역대 2번째로 많아, 지난 20여년간 261만명(11.3%p) 증가

* 법정 최저임금('20년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0만명(15.6%).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0만명(15.6%)으로 261.3만명(11.3%p) 증가
- ▶ 2020년 최저임금 미만을(15.6%)은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 다만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16.5%)보다는 0.9%p 감소

나. 2020년의 높은 미만을(15.6%)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OECD 최상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상대적 수준)에 기인

- ▶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을(15.6%)은 최저임금이 그간 급격하게 인상되어,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가장 크게 기인
 - ※ **[빠른 인상속도]**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음*.
 - * G7 국가(이탈리아 제외)의 최근 3년(2018~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
[캐나다] 22.8 [영국] 16.3 [일본] 9.5 [독일] 5.8 [프랑스] 4.0 [미국] 0.0
 - ※ **[높은 상대적 수준]**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2020년 기준, 경총 추정치)
 - * 콜롬비아, 터키,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6번째로 높으나,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은 산업구조, 경제 규모가 우리와 상이
 - ** 우리나라와 G7 국가(이탈리아 제외)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 62.4 [프랑스] 61.3 [영국] 57.1 [캐나다] 50.0
[독일] 48.1 [일본] 44.3 [미국] 30.7

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이 높게 나타남.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8만명 중 36.3%인 132.4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5인 미만 사업장 45.7%, 5~9인 사업장 27.0%, 10~29인 사업장 20.0%

라.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을, 농림어업 51.3%, 숙박음식업 42.6%.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해

- ▶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 전체 근로자의 40~50%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 ▶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간 2020년 최저임금 미만의 편차가 최대 49.1%p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

2. 시사점

- ▶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되었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은, 최저임금이 그간 급격하게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여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
- ▶ 일부 규모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이 30~50%에 달하고,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을 편차가 최대 50%p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 작년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음.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따라서 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키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 필요.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 헌법재판소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2017헌마1366)

1

주요 분석결과

가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19만명(15.6%)
역대 2번째로 많아, 지난 20여년간 261만명(11.3%p) 증가

□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0만명(15.6%)*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다만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6만명(16.5%)보다는 19.6만명(0.9%p) 감소

*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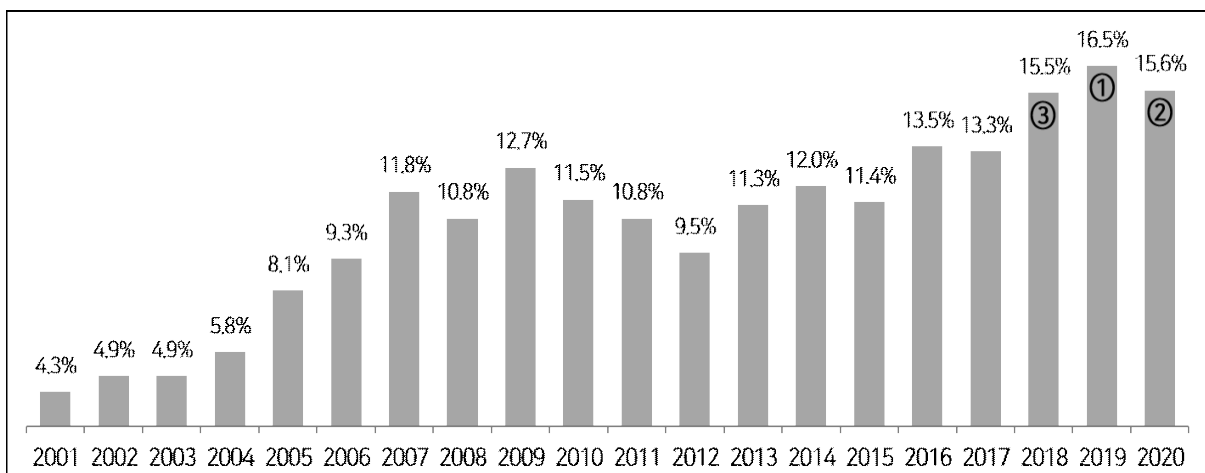
○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2,044.6만명) 중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0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5.6%)

* 법정 최저임금(20년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역대 최고치는 2019년 16.5%). 다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2019년(10.9%)에 비해 낮아진 영향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세는 꺾임.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0만명(15.6%)으로 261.3만명(11.3%p) 증가

< 그림 1.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경찰부가조사 기준) 추이 >



주 : ①은 역대 최고치, ②는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 ③은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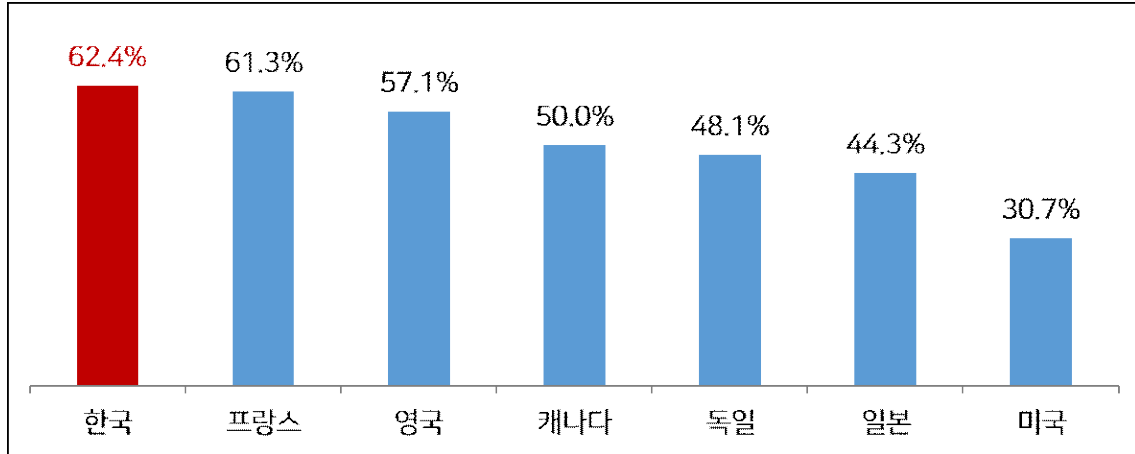
나

2020년의 높은 미만율(15.6%)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OECD 최상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상대적 수준)에 기인

-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최저임금이 그간 급격하게 인상되어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가장 크게 기인
 - **(빠른 인상속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G7) 중 가장 높음.
 -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 이는 동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5%)의 2.0배에 달함.
 - 특히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3년(2018~2020)간 32.8%로 동 기간 주요국(G7,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이탈리아 제외) 보다 약 1.4~8.2배 높은 수준*
 - * G7 국가(이탈리아 제외)의 최근 3년(2018~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
[캐나다] 22.8 [영국] 16.3 [일본] 9.5 [독일] 5.8 [프랑스] 4.0 [미국] 0.0
 - **(높은 상대적 수준)** 現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하였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2020년 추정치)
 - *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수준(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등)의 국제비교를 통해 판단 가능. 절대적 수준 비교는 국가별로 상이한 임금수준, 물가수준, 국민소득 등을 반영하지 못함.
 - OECD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 수준
 -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콜롬비아, 터키,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6번째로 높으나, 이들 국가들은 산업구조, 경제 규모가 우리와 상이

-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약 15~30%p 높은 수준

< 그림 2.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0) >



< 표 1.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0) >

순위	국가명	중위임금 대비	순위	국가명	중위임금 대비	순위	국가명	중위임금 대비
1	콜롬비아	90.8%	11	룩셈부르크	54.7%	21	독일	48.1%
2	터키	73.9%	12	이스라엘	54.4%	22	네덜란드	47.7%
3	칠레	70.3%	13	호주	54.2%	23	벨기에	46.7%
4	뉴질랜드	68.8%	14	멕시코	52.5%	24	일본	44.3%
5	포르투갈	63.2%	15	슬로바키아	51.8%	25	라트비아	44.0%
6	한국	62.4%	16	스페인	51.7%	26	에스토니아	43.8%
7	슬로베니아	61.4%	17	캐나다	50.0%	27	체코	43.5%
8	프랑스	61.3%	18	헝가리	49.4%	28	아일랜드	42.6%
9	영국	57.1%	19	그리스	48.6%	29	미국	30.7%
10	폴란드	56.2%	20	리투아니아	48.6%	OECD평균(29개국)		54.2%

- 주 : 1. 순위는 임금총액 중위값(median)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순
 2. 임금총액 중위값이 OECD 게재 기준 최근 5년(2015~2019)간 연평균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단, 독일은 2016~2019년간 연평균 상승률 기준)
 3.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7.25달러) 기준으로 분석. 46개 주(50개 주, 1개 특별구 중 최저임금이 없는 5개 주 제외)의 최저임금 평균(2020년 기준 9.46달러) 적용 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0.0%로 상승하나, 순위변동 없음.
 4.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州) 최저임금 기준(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으며,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온타리오 주를 기준으로 자료 발간)
 5. 2020년도 최저임금은 Eurostat,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및 최저임금 고시 원문자료 참조
 자료 : OECD, Eurostat,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등

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
- 사업장 규모별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 사업장(36.3%), 5~9인 사업장(20.1%), 10~29인 사업장(13.5%) 등 규모가 작을수록 미만율이 높게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8만명 중 36.3%인 132.4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남.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5인 미만 사업장 45.7%, 5~9인 사업장 27.0%, 10~29인 사업장 20.0%

< 표 2.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경찰부가조사 기준) 추이 >

구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천명)			최저임금 미만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전체	3,111	3,386	3,190	15.5	16.5	15.6
5인 미만	1,280	1,400	1,324	36.3	37.0	36.3
5~9인	696	796	707	19.6	21.8	20.1
10~29인	685	644	622	14.9	14.0	13.5
30~99인	283	348	362	7.3	8.9	9.1
100~299인	107	120	103	5.5	6.0	5.2
300인 이상	59	78	71	2.3	2.9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연도

라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을, 농림어업 51.3%, 숙박음식업 42.6%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
 -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51.3%), 숙박 및 음식점업(4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3%)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통신업(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9%)에서는 낮게 나타남.
 -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 전체 근로자의 40~50%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을 편차가 최대 49.1%p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

< 표 3.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경찰부가조사 기준) 추이 >

구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천명)			최저임금 미만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전체	3,111	3,386	3,190	15.5	16.5	15.6
농림어업	46	52	62	40.4	42.4	51.3
제조업	272	291	279	6.9	7.4	7.1
건설업	169	179	164	10.7	11.0	9.9
도매 및 소매업	486	451	402	21.6	20.0	18.5
운수 및 창고업	124	140	152	15.7	17.3	18.7
숙박 및 음식점업	586	619	557	43.1	42.8	42.6
정보통신업	23	27	17	2.9	3.4	2.2
금융 및 보험업	43	43	45	5.4	5.7	6.1
부동산업	76	98	59	21.5	24.1	16.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	38	29	3.4	3.8	2.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251	258	233	21.0	20.8	18.3
공공행정	156	209	219	13.8	19.4	19.4
교육서비스업	128	161	150	8.5	10.4	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48	454	473	17.4	20.9	2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	110	91	25.6	32.1	27.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256	205	187	33.9	28.3	2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연도

-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되었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0만명(15.6%)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난 20여년간 261.3만명(11.3%p) 증가
- 이는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여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
 - 최저임금이 이미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높아진 결과 역대 4번째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5인 미만 사업장 36.3%, 농림어업 51.3%, 숙박 및 음식점업 42.6%에 달하는 것은 해당 규모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특히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의 편차가 최대 50%p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였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8p 참고)
 -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 매출 감소와 이자지급능력 약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9년 14.8%에서 2020년 21.4%로 급증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 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 ※ 최근 한계기업 비중 추이(%), '20년은 추정치, 한국은행
14.2('16)→ 13.7('17)→ 14.2('18)→ 14.8('19)→ 21.4('20)

-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소비심리 저하로 소상공인의 70.8%가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37.4%로 집계(소상공인연합회, 2020.12)
 -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주요 5개 업종의 소상공인 1,018개사 조사결과
- 소상공인들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2년 미만'(45.3%), '2년 이상'(40.2%)으로 전망(소상공인연합회, 2020.12)
 -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주요 5개 업종의 소상공인 1,018개사 조사결과
- 따라서 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키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관리해야 함.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하는 입법 시급
 - 헌법재판소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7헌마1366전원재판부*)
 - *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한 이 사건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외국의 경우,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이 지역별, 산업별로, 호주가 연령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악화**

■ **(경영여건 악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비심리 저하로 매출이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코로나19 이전)** 소상공인의 54.2%는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月 250만원) 미만이고, 16.2%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 미만(중소벤처기업부, 2019.12)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11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4만여개 사업체(모집단 274만개사 중 4만개사 표본추출) 대상 조사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70.8%가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37.4%로 집계(소상공인연합회, 2020.12)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주요 5개 업종의 소상공인 1,018개사 조사결과

▶ **(코로나19 : 체감경기 악화)** 2021년 2월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43.8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최근 12개월(2020.3~2021.2)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2)

※ 소상공인 사업체 2,400개사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

< 월별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 추이(2020.1~2021.2) >

구분	2020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체감경기 지수	67.3	41.5	29.7	73.8	88.3	82.6	68.1	67.6	54.9	78.0	79.9	51.6	35.8	43.8

주 : 체감 경기 지수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2021.2

■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 회복 소요기간)** 소상공인들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2년 미만’ 45.3%, ‘2년 이상’ 40.2%라고 응답했으며,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13.7%에 불과(소상공인연합회, 2020.12)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주요 5개 업종의 소상공인 1,018개사 조사결과